

붙임 4

기준중위소득(120%)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기준중위소득 120%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675,000	95,183	24,266	95,712
2인	4,420,000	157,035	109,680	158,960
3인	5,658,000	202,377	152,948	205,281
4인	6,876,000	247,170	205,217	251,147
5인	8,035,000	289,638	254,448	296,718
6인	9,143,000	324,452	291,356	336,105
7인	10,218,000	377,299	351,294	397,093
8인	11,294,000	422,318	400,222	453,848
9인	12,370,000	453,848	433,430	498,289
10인	13,446,000	498,289	478,514	543,979

4-2.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해당자는 신청불가)

(참여중, 참여 가능한 자, 지원금 수혜자, 중도해지→ 공고일 기준('24.5.24))

- ①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I·II, 희망저축계좌 I·II,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 ②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22년 이전 신규가입)」,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플러스」,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③ ①,②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④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 해지자 중 '병역의무이행'으로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⑤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舊 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⑥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⑦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 공공기관 범위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http://www.cleaneye.go.kr>) 참조

⑧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⑨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⑩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4-3. 신청 방법(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4. 5. 31.(금) 09:00 ~ 2024. 6. 17.(월) 18:00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통장 홈페이지(account.ggwf.or.kr) 신청

【신청 시 유의사항】

- ▶ '24. 6. 17.(월) 18시까지 신청 제출 완료해야 함
- ▶ 첨부파일 형식은 pdf, jpg, png로 제한됨
- ▶ 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및 착오기재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음